기상청 공고 제2026-110호

2026년도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

2026년도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(시설물관리원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26년 8월 6일
운영지원과장

---

1. 채용내용

신분(직종)	채용인원	근무부서	담당업무
공무직 근로자 (시설물관리원)	1명	운영지원과	- 건축, 기계, 소방(기계) 및 가스설비 등 운영

2. 근무조건

○ 근무기간: 계약체결일 ~ 정년(60세)

※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시용계약(임시계약)을 체결하여 최초 6개월간 업무에 배치

※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식계약 체결

※ 단속적 근로자(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)에 해당(고용노동부 승인됨)

○ 근 무 지: 기상청 서울청사(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)

○ 보수 및 근무시간

보수	근무체계	근무시간	비고
약 252만원/월	교대근무 (당직-비번-휴무)	- 1일 19시간 (당일 08:30시 ~ 익일 08:30) ※ 휴게시간 별도 지정 운영	-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교대근무

※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정액급식비가 포함된 금액이며, 연장·야간·휴일근무수당 별도 지급

※ 명절휴가비, 복지포인트, 각종 수당(기술 자격증 등)은 지급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

※ 후생복지: 4대 보험 가입(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)

※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는 변경될 수 있음

※ 기상청의 청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지(지역, 장소 등), 근무체계, 근무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3. 지원 자격

○ 공통 응시자격 요건(※ 최종 면접전형일 기준)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복수국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)
- 면접전형일 기준 18세 이상, 정년(60세)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남자의 경우 면접전형일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전형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
- 거주지, 성별, 학력 제한 없음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채용 분야 응시자격 요건(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

-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

  ·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

  ※ 해당 자격증: 공조냉동기계, 설비보전, 건설기계설비, 용접, 에너지관리

○ 우대요건(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

- 서류전형 시 적용되며, 업무경력 및 자격증 각각 인정

  ·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시설물관리 분야 업무경력(경력은 합산 적용)

  ※ 해당 자격증: 공조냉동기계, 설비보전, 건설기계설비, 용접, 에너지관리

  ·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(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)

  ※ 해당 자격증: 소방설비(기계분야, 전기분야), 가스, 전기 산업기사

○ 가점사항

- 본 채용공고는 채용인원이 1인으로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 및 「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41조의3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등에 부여되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. 단,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

○ 응시 자격요건 등 기본사항

[공통]

- 채용 분야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
-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
- **단속적 근로 승인신청 동의 가능한 자(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)**

[업무경력 범위]

- '업무경력'은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
-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, 근무 기간, 고용 형태(정규직, 비정규직)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, 근무 형태(상근직 여부 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), 발급기관과 발급자(대표자 직인, 담당자 성명·연락처 포함)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, 기재 사항의 미비로 불분명하거나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

  ※ 서류전형 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근부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재.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

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※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

- 경력 기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,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(주 40시간)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
※ (예시) 4년간 주 20시간 근무: 4년×(20시간/40시간)=2년)
-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* 중 1종, ③ 소득금액증명서,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**서류 제출 필수
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
** 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 내역 등

[자격증의 범위]

- 자격증은 그 자격이 계속 인증되는 자격증만 유효하게 인정되며,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

[기타사항]

- 응시자가 작성·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만 자격요건으로 인정함(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)

4. 전형(시험) 방법

○ **1차 시험: 서류전형** (응시 자격·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 요소별 평가)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(채용인원 5배수 이하)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「자체 서류전형기준」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
※ 자체 서류전형 기준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우대조건(자격취득 후 업무경력, 자격증) <서식8>

○ **2차 시험: 면접전형**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요소별 심사 <서식9>
- 면접방법 및 시간: 개별면접, 10분 이내
※ 면접일시, 장소, 방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

○ **합격자 결정**

- 면접전형 평정 요소의 각 항목에 대하 '상', '중', '하'로 평가하여,

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

※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하며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

-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

-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,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며,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

※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(2배수 이내)로 결정

- **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 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**

5. 채용일정

채용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전형	최종 합격자 발표
'26.8.6.(목) ~8.19.(수)	'26.8.13.(목) 09:00 ~8.19.(수) 18:00까지	'26.9.3.(목) (예정)	'26.9.17.(목) (예정)	'26.10.1.(목)
기상청 및 나라일터 누리집	담당자 전자우편	기상청 및 나라일터 누리집	기상청 서울청사 회의실	기상청 및 나라일터 누리집

※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

※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(www.kma.go.kr) 및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 누리집에 게재하고,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

※ 면접전형 참석 경비(교통비 등)는 지원되지 않음

6.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: 2026. 8. 13.(목) 09:00 ~ 8. 19.(수) 18:00 까지

○ 접수방법: 전자우편으로만 접수

- 전자우편 주소: heumno1@korea.kr / 담당자: 박정흠(042-481-7236)

※ **접수 마감시간(8.19. 18:00)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**하며, 접수 확인을 메일로 회신

7. 제출서류(붙임)

○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(※ 지정서식 활용)

구분	제출 서류명	비고
공통사항 (필수 제출)	- 제출서류 목록(총괄표)	<서식1>
	- 응시원서	<서식2>
	- 자기소개서	<서식3>
	- 직무수행계획서	<서식4>
	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<서식5>
	-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	-
	- 주민등록초본 ※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	-
	-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	<서식6>
	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	<서식7>
해당자 제출	- 우대요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	-
	-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	-

※ 작성된 서류는 **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**하여 제출

※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제출

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

※ 응시원서의 **파일 제목은 '운영지원과 시설물관리원_성명'으로 저장**

※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**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**(예: 000000-[redacted])

8. 유의 사항

○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

○ 온라인 접수의 경우 통신, 서버 장애로 접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용기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정상 접수 여부는 응시자가 확인

○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, 연락 불능, 전형 일정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
○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

○ 응시원서,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 추가합격 가능

○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한다.

○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

○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 ‘알림·자료’ - ‘채용’ - ‘채용정보’을 통해 공고

○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

○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, 채용취소,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, 전형일시 등을 새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

○ 채용 관련 일제의 공지 사항은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오니, 응시자는 수시로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람

○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(042-481-7236)로 문의

9.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

○ 이 고지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

○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**30일**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
○ 다만,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

○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붙임1]를 작성, 전자우편(heumno1@korea.kr)을 통해 신청

○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**30일** 까지 보관하며,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
10. 채용비리 관련

○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
○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

○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[붙임2참조]

11. 직무기술서

직무분야	근무예정 부서	선발예정인원
공무직 근로자(시설물관리원)	기상청 운영지원과	1명

주요업무	○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직무 ○ 청사 기계 분야 시설물 운영, 감시, 점검 및 유지보수 - 항온항습 설비, 냉난방 설비, 공조설비, 보일러 - 각종 팬, 펌프 설비, 배관 및 덕트 설비, 저수조 등 ○ 청사 기계, 방재 및 건축물 관리 관련 외주 공사(용역)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○ 기계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- 각종 계측값 측정·검침 및 운전·점검일지 작성 ○ 기계설비 장애 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○ 청사 에너지 및 재난, 안전, 보안 관련 업무 지원
필요역량	○ **(공통 역량)**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정 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공동체 의식, 근면 성실성 ○ **(직무분야 역량)** 상황인식 및 판단력, 업무 이해도, 의사소통 능력
필요지식	○ 기계, 방재설비 관련 법령, 지침, 기술기준 등 업무에 관한 지식 ○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지식
응시자격요건 **필수요건**	**○ (국적) 대한민국(복수국적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)** **○ (나이) 면접일 기준 18세 이상, 정년(60세)에 해당되지 않는 자*** * 남자의 경우 면접전형일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**○ (거주지) 제한 없음, (성별) 무관, (학력) 제한 없음** **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해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** **○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** -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* 소지자 * 공조냉동기계, 설비보전, 건설기계설비, 용접, 에너지관리 **※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함**
우대요건	**○ 서류전형 시 적용되며, 업무경력 및 자격증 각각 인정** - 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*취득 후 시설물 관리 분야 업무경력(경력은 합산 적용) * 공조냉동기계, 설비보전, 건설기계설비, 용접, 에너지관리 -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* 소지(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) * 소방설비(기계, 전기), 가스, 전기 **※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함**

〈서식1〉

제출서류 목록 총괄표

응시번호		*채용담당자 기재(응시원서 제출 시 삭제)*
성명	**근무예정 부서**	**채용직종**
응시자 기재	기상청 운영지원과	시설물관리원

□ 제출서류(총괄표)

연번	제출서류명	제출유무 ("○"표기)	
		제출	미제출
1	- 제출서류 목록(총괄표)		
2	- 응시원서		
3	- 자기소개서		
4	- 직무수행계획서		
5	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	
6	-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		
7	- 주민등록초본 ※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		
8	-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		
9	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		
10	- 우대요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		
11	-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		

※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"O" 표시

〈서식2〉

응시원서

응시분야	시설물관리원	접수번호	*채용담당자 기재 (응시원서 제출 시 삭제)*
1. 인적사항			
성 명	(한글) *기상청*	**생년월일**	*0000.00.00*
주 소	*대전광역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*		
연 락 처	(휴대폰) *000-0000-0000*	**병역사항**	필, 면제, 해당없음
전자우편	@		*복무기간(○년○월) 또는 면제사유 기재*

2. 자격사항 ※ 응시요건 자격증 필수 기재			
자격증명	**자격증(면허)번호**	**취득일**	**비고**
000000	*000000*	*OOOO.OO.OO*	*응시요건 자격증(필수)*
000000	*000000*	*OOOO.OO.OO*	*우대요건 자격증(해당자)*

3. 경력사항 ※ 직무관련 경력사항 기입			
근무기관(근무부서)	**근무기간**	**직위**	**담당업무**
00기업(00팀)	*2020.1.1. ~ 2020.12.31. (1년 0월 0일)*	*대리*	*000*
00기업(00팀)	*2023.5.1. ~ 2024.6.30. (1년 2월 0일)*	*사원*	*000*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 명: (서명)

운영지원과장 귀하

※ 인적사항은 서류전형을 위한 필수정보이며,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으로 활용함

응시원서 작성 요령

1.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

2.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**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,**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3.「응시원서」는 아래의 <작성 요령>에 따라 작성함.

〈작성 요령〉

① 응시번호: 기재하지 말 것

② 주　　소: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(우편물 수령 등)을 기재

③ 연 락 처: 본인 휴대폰 또는 긴급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

④ 병역사항: 남자의 경우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고 복무기간 또는 면제사유 기재, 여자의 경우 '해당없음' 체크

⑤ 자격사항: 필수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자격사항 기재

⑥ 경력사항: 직무관련 경력사항을 기재

⑦ 기타사항

- 서　　명: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스캔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
-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목록에도 포함되어야 함
-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

<서식3>

자기소개서(2매 이내)

응시분야	시설물관리원	접수번호	*채용담당자 기재 (응시원서제출시삭제)*	성 명	*기상청*

-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,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을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기술

- 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월 일

작성자 ○ ○ ○ (서명)

<서식4>

직무수행계획서 (3매 이내)

응시분야	시설물관리원	접수번호	*채용담당자 기재 (응시원서접수시작)*	성 명	*기상청*

- 채용분야의 담당직무와 연계하여 향후 활동계획 등을 채용 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기술

- 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월 일

작성자 ○ ○ ○ (서명)

〈작성 요령〉

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, 작성자 확인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

※ 지원자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

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, 지원 동기, 관련분야 경력・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

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각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

〈서식5〉

〈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〉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·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·이용 목적

가. 수집항목: 성명, 주소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학력·경력·자격·면허 사항 등
나. 목　　적: 채용시험 관련 학력·경력·자격·면허·결격사유 등 확인

2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가. 신규 채용에 합격하여 최종 계약한 자는 근로관계 종료일까지
나. 예비합격자의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
다. 최종 불합격 시 채용서류 반환기간 종료 후 즉시 폐기

3. 수집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조회를 위해 해당 업무 취급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가. 제공받는 자: 개인정보(경력, 자격증) 확인 기관
나. 제공목적: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관리(자격 확인)
다. 제공항목: 경력사항, 자격증 등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
라.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 기간: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

4.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.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귀하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?

동의함 □　　동의안함 □

2026년　　월　　일

성　　명:　　(서명)

〈서식6〉

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**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**합니다.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합격 결정 취소, 근로계약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, 불이익에 대해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6년 월 일

성 명 (서명)

운영지원과장 귀하

<서식7>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**」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 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해당 □ 비해당 □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**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	해당 □ 비해당 □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해당 □ 비해당 □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해당 □ 비해당 □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해당 □ 비해당 □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해당 □ 비해당 □
1, 2, 3-1, 3-2 (모두 해당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해당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해당 □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

〈서식8〉

서류전형 심사표

응시번호		응시분야	
성 명			

□ 응시요건 적격 여부(소극적·적극적 서류전형 항목)

응시요건	적격 여부	
1. 응시연령(면접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)	*적격*	*부적격*
2.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전형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		
3. 자격요건 충족 여부		
4. 자기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여부		
결 과	**적 격( ) 부적격( )**	

□ 심사 내용(적극적 서류전형 항목)

평정요소			배점	점수
1. 자기소개서 S: 50 / A: 40 / B: 30 / C: 20 / D: 10			**50**	
2. 직무수행계획서 S: 50 / A: 40 / B: 30 / C: 20 / D: 10			**50**	
3. 우대 요건	시설물관리 관련 기계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시설물관리 분야 업무경력(경력은 합산 적용) ※ 해당 자격증: 공조냉동기계, 설비보전, 건설기계설비, 용접, 에너지관리	6월 이상 ~1년 미만	**1**	
		1년 이상 ~3년 미만	**3**	
		3년 이상 ~5년 미만	**5**	
		5년 이상	**7**	
	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(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) ※ 소방설비(전기, 기계), 가스, 전기		**3**	
합 계			**110**	

2026년 월 일

심사위원 ○○○ (서명)

※ 소극적 서류전형: 응시요건 적격 여부 심사, 적극적 서류전형: 응시요건 적격여부 및 평정요소별 심사

〈서식9〉

면접전형 심사표

필기적부 재정용란	(예시문):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.	직종	
	본인필적:	응시번호	
생년월일 (주민등록번호 앞자리)		성명	

평정요소	위원평정		
	상	중	하
가.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			
나.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			
다.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		
라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			
마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			
계	개	개	개

2026년 월 일

면접위원 ○○○ (서명)

□ **면접위원 유의사항**

1. 불합격: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한 경우와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경우.
2. 위원은 굵은 선 안의 '상', '중', '하' 해당란에 ○표로 평정하시고,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.

[붙임1]

채용서류 반환 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

청구인	성명	접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
반 환 요 구 서 류	

「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,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)

운영지원과장 귀하

공지사항

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[붙임2]

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

◇ **피해자**: 부정행위로 인하여 **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**을 받은 자

① **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**

■ (피해자 **특정 가능 시**)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**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** 부여

※ 예: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, 점수 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

- 최종 **면접단계** 피해 → 해당 피해자 **즉시 채용**

- **필기 단계** 피해 → 해당 피해자 **면접응시 기회** 부여

- **서류 단계** 피해 → 해당 피해자 **필기응시 기회** 부여

■ (피해자 **특정 불가 시**)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**피해자 그룹**을 **대상**으로 **부정행위 발생단계**부터 **제한경쟁채용** 실시

※ 예: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,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

- 최종 **면접단계** 피해 → 피해자 그룹 **면접 재실시**

- **필기 단계** 피해 → 피해자 그룹 **필기시험 재실시**

- **서류 단계** 피해 → 피해자 그룹 **서류시험 재실시**

② **부정 합격자 확정·퇴출 전(前)이라도 우선 시행**

■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